

[사법농단 ISSUE PAPER ⑪]

**쌍용자동차 · 콜텍 정리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24.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1
나. 콜텍 정리해고 사건	3
다.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 사건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5
가.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6
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71],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7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7
나. 특조단의 평가	8
4. 사법농단의 실태와 평가	9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10
가. 문건 의미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10
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미흡	11
다. 재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11

1. 사안의 개요

쌍용자동차 경영상 해고, 콜텍 경영상 해고, 발레오만도지회 조직변경 사건은 대법원 재판 진행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건들이다. 위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2심까지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통상적인 법리에 따른 2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여 결국 그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180도 바뀐 사건들이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8개월 만에 2심 판결을 파기하거나(쌍용차), 감정인의 감정취지와 다른 판결을 하는 등(콜텍)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한 2심의 엄밀한 사실적·법적 판단을 바꾸거나 조직변경에 대해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를 가져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화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2004~5년 상하이차가 인수할 당시부터 먹튀 논란이 있었던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는 2009. 1.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고 2009. 3. 31. 무려 2,646명(전 직원의 37%, 생산직의 45.5%)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2009. 6. 8. 희망퇴직하지 않고 남은 980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이후 추가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영상 해고된 인원은 165명)를 실시했다. 이 중 156명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¹⁾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약 2년간 심도 깊은 심리 끝에 2014. 2. 7. 경영상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²⁾

그런데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주심 박보영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2320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22574 판결, 사무직 5명이 평택지원에 제기한 2009가합3533판결도 있음

2)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판결

대법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나56869, 56876(병합) 판결), 다시 상고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 9. 28. 2016다29944·29951 판결, 주심 김소영 대법관).

당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실제와 다른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판단하였으며,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밝혀진 회계장부 조작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³⁾

한편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15. 12. 30. 쌍용차, 쌍용차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해고자들에 대한 단계적 복직 합의를 하였고 이후 다수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영상 해고 및 그 이후의

3)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동성 위기 판단 -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담보를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산업은행의 대출 거절을 들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사채 및 기업어음발행, 자산매각 후 리스 등 민간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피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너무나 간단히 쌍용차의 유동성위기를 인정했고 이를 완화할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②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재무건전성 위기 관련 - 대법원은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되지 않았고 재무건전성 위기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신차 개발이 거의 완료된 C200(코란도C)의 경우 반드시 매출 수량이 추정되어야 하며, 안전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차종의 경우 모두 공헌이익이 (+)였으므로 계속 생산되어 판매하면 미래현금흐름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부채비율이 561%에서 187%로 떨어지게 되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 전반기까지 계속 (+)의 영업현금흐름을 유지하였으므로 영업만으로도 이자비용 등을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만연히 쌍용차의 재무건전성 위기를 인정한 것이다, ③ 쌍용자동차 경영위기의 성격 관련 -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는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구조적 위기라고 보았다. 그러나 쌍용차는 2008년 이전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005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고, 신차종 개발도 예정되어 있었다. 2008년 들어서 국제 금융위기, 경유가격 인상, 유럽 환경 규제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뿐이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가 있었던 2009. 6.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금융위기, 유럽환경 규제, 경유가격 인상)들도 개선되기 시작하여 매출 회복이 기대되었다. ④ 인력구조조정 규모 산정 관련 - 인력 구조조정 규모도 모달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레이아웃을 검증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 쟁송과정에서 쌍용차는 그 주장을 스스로 변경하여 교대조 감축(2교대⇒1교대)이 인력구조조정 규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⑤ 해고회피노력 관련 - 대법원은 부분휴업, 임금 동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경영상 해고 이후인 2009. 8. 6.이 아니라 경영상 해고 당시인 2009. 6. 8.을 기준으로 경영상 해고를 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해고회피노력이 우선적이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지난한 복직 투쟁 과정에서 최근 30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나. 콜텍 정리해고 사건

2006. 4. 2.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설립되자, 주식회사 콜텍(이하 '콜텍'이라 함)은 2007. 1. 조합원 4명을 강제 전환배치 명령하고, 같은 달 22. 조합원 2명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회사는 같은 해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이인근 등 간부 4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40명에 대하여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다가, 2006. 4. 9. 휴업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7. 10. 조합원들을 전원 경영상 해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콜텍은, 매출액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11억원에서 690억원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 같은 기간 손익 또한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66억원 이상의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불능력과 자금조달이 매우 양호하고 안정적이었는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였다.

이에 콜텍지회 조합원 39명은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2008가합10205)(제1사건), 먼저 해고된 4명은 2008. 8. 15. 같은 기간 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008가합23355)(제2사건).

두 사건은 모두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39600 판결, 2009나47090 판결). 이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등법원의 콜트약기, 콜텍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하였고(2010. 10. 4.), 2년이 넘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2010다3735 판결 - 주심 이상훈 대법관).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2014. 1. 10. 상고취지에 따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21609 판결, 2010다3629 판결), 재상고 되었으나 같은 해 6. 1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843 판결, 12850 판결).

당시 2년을 미루다가 “심리가 미진하다”⁴⁾며 상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도 비판이 많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콜텍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 영업손실의 수준은 향후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이 없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13. 8. 16. 자 ‘주식회사 콜텍 및 대전공장 경영상황 감정보고서’⁵⁾), “정리하고 당시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이 피고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고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고 한 파기환송심⁶⁾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재상고심(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 사건

2010년 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이하 “지회”)가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해 회사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회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주를 받은 조조모(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 현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의 모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총회를 개최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가결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가합124798 판결)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은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

4) 대법원은 콜텍의 대전공장이 계속하여 영업손실을 냈다고 전제한 후, “대전공장이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낸 원인이 무엇인지, 위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하여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위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콜텍 전체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피고가 대전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것이 피고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심리한 다음에, 피고가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조치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5) 감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전공장을 콜텍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부문 또는 조직으로 간주할 수 없고, 둘째, 대전공장의 손실금액은 콜텍 전체의 자산규모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볼 때 3.4%에 불과하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의 영업손실 상황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콜텍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 영업손실의 수준은 향후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6) 관여법관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지회 차원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상고 4년 만인 2016. 2. 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 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 의견 8인7, 소수 의견 5인8).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1. 30. 파기 취지 그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909 판결), 대법원에 재상고 되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 3. 9. 자 2016다56694 판결).

그동안의 판결레나 하급심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와 학계로부터 ① 민법상 비법인 사단론을 “이상하게” 끌어들이는 정체 불명의 판결, ② 독자적 단체협약 능력이 없는 근로자단체가 조직형태 변경을 거치면 독자적 협약 능력이 생긴다는 기이한 논리, ③ 조직형태 변경으로 산별노조에 편입한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특별히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9)

한편 위 회사 대표이사 강기봉 등은 노동조합 총회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이유로 고소된 후 재정신청 인용결정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법정 구속은 안됨)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6. 선고 2015고단306·848(병합) 판결 -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총회에 개입한 노무법인 창조건설팅도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 사건). 이러한 사용자와 창조건설팅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의 패소 확정 등으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력 복원은 매우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7) 대법관 양승태, 김용덕, 박보영, 고영환, 김창석, 조희대, 권순일, 이기택(김용덕, 이기택은 보충 의견 제시)

8)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보충 의견 제시), 김소영, 박상욱

9) 박중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안암법학 50권(2016); 이승욱, “조직형태변경과 산별노조의 하부조직”, 노동법연구 제42호(2017); 신수정,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노동법학 제57호(2016)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쌍용자동차·콜텍 정리해고 사건과 발레오만도 지회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된 것은 '(150727)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 '(150728)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15073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71]¹⁰⁾, '(151119)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전략 [82]' 등 모두 4건이다.

가. 현안 관련 말씀자료 [70],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2015. 7. 27. 작성된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은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아래 ㉓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㉔노동, ㉕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노동부문'이라고 하면서, 법원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정리해고 사건」을 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이라고 하면서 콜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언급한다.

이 문건 내용은 다음 날(2015. 7. 28.)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80] 문건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71],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10) 특조단 조사보고서 153쪽에 따르면 “임종현 기조실장은 정다주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자신의 지시로 작성, 보고한 문건인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1.)[71]를 시진국 심의관에게 교부하였고, 시진국 심의관은 이를 [80]문건의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 정리해고 사건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2015. 7. 31.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과, 2015. 11. 19. 작성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위 [70], [80] 문건에 기재된 사건들 외에 몇몇 사건을 추가하여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를 내세우고 있는데, 「4대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목차에 노동 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발레오만도 사건을 언급한다.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사건 ⇨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 사용자가 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기존 노조 재산의 귀속 등)

☑ 대법원 2012다96120 사건

▶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금속노조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피고)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자,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 2015. 5. 28. 공개변론 실시,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쌍용자동차·콜텍·발레오만도 사건을 독립된 진실 규명 대상으로 구별하여 검토하지는 않고,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의 일부 내용(나. 기타 -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조사보고서 166쪽 이하)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 중 [80] 문건에 대해서, “시진국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중헌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한 것이고, “임중헌 기조실장은 상고법원 입법안에 대한 청와대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설득의 최종 골든 타임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조사보고서 171쪽).

또한 [82] 문건과 관련해서는, 임중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것으로, “19대 국회가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가 예상되고 청와대, 법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되 반대 입장의 진양지인 청와대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을 검토”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3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80] 문건 중 박지원·원세훈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뚜렷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조사보고서 172쪽), 임중헌 기조실장과 정다주 심의관의 진술과 거론된 대법원 판결들의 주심 대법관 및 선고 시기, 이 문건이 대법원장이나 처장에게 보고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문건은 임중헌 기조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 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쪽).

한편 [82]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조사보고서 173쪽), “2015. 11. 19.의 임종헌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 바, 이는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 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 177쪽).

4. 사법농단의 실태와 평가

특조단 3차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임종헌 차장과 정다주, 시진국 심의관 등이 해당 노동사건 판결이 청와대 의도에 부합하도록 청와대와 적극 교감하였고, 대법원이 특정 의도(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BH의 의도에 부합함으로써 상고법원을 추진하려는 의도)하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82]” 문건을 보면,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다고 스스로 적었다.(3차

보고서 173쪽). 그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법원행정처가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거시하면서, “직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표현은 기존에 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구체적 재판 사건에 대해 협조해왔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특히 발레오만도 지회 사건의 경우, 위 문건들이 모두 실제 발레오만도 지회 사건의 공개변론(2015. 5. 28.)을 실시한 다음, 판결이 선고(2016. 2. 19.)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된다고 하면서,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단순히 이미 선고된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장래 판결이 선고될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재판 거래 의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BH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재판의 결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앞선 이슈페이퍼에서 지적하였듯이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등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협조사례’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문건 작성 지시자, 작성자, 보고 및 실행자, 그리고 재판 관여 법관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가. 문건 의미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앞서 철도노조 사건 이슈페이퍼에서 본 것처럼, 특조단은 위 [80] 문건을 “임종헌 기조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 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지나친 과소평가이다. 같은 내용이 다른 시기 다른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 [70]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면,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구체적 작성·활용 경위 조사 미흡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할 뿐, 보고서와 문건을 통해 드러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문서 작성 경위, 지시 및 보고 범위, 구체적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앞서 본 것처럼 특조단 조사보고서는 [82] 문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하였음”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왜 직접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조 역시 유지”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여 실제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갔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활용하겠다는 기조 유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반복적으로 열거하면서, 여러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획·예비 단계에만 거친 것으로 단정하고 조사를 마친 것이다.

다. 재판에 대한 영향 조사 필요성

특조단 스스로 시인하였듯이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

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각 재판의 관계자들에게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이들 세 가지 노동사건은 공통적으로, 통상적 법리에 따른 2심판결이 파기되고 재판 결론이 180도 바뀐 사건들이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8개월 만에 2심 판결을 파기하거나(쌍용차), 감정인의 감정취지와 다른 판결을 하는 등(콜텍)의 절차적으로도 많은 의구심을 남긴 사건들이다. 무엇보다 사실심의 엄밀한 사실적·법적 판단을 바꾸거나 조직변경에 대해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를 가져와 노조의 단결권을 형해화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발레오만도 지회 사건은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협력사례’로 언급함으로써 노골적인 재판거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커, 이후 1,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이라는 재판 결론에의 영향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